제47.21호

행정 명령

뉴욕주에서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뉴욕주 방위군이 다양한 교정 시설에서 공공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 재산을 보호하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명령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과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교도관의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, 교도소 및 지역사회 감독부(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)의 보살핌을 받는 32,290명 이상의 개인, 그리고 이러한 교정 시설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했기 **때문에,**

검토 결과 직원을 지원하고, 교도소 및 지역사회 감독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하고, 직원 자원을 보존하고, 주 전역의 교정 시설에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기 **때문에,**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-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. 본 행정명령은 2026년 9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.

또한, 행정부법 제2-B조 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수정하며 이 모든 법률은 2025년 2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 중단됩니다.

- 주 재정법(State Finance Law) 97-G장: 응급 사태에 대응 및 복구함에 있어서 음식물, 물자, 서비스, 장비의 구매,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, 개인,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,
- 주 재정법 제112조(주 헌법 제5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, 그리고 주 계약에 추가 작업, 부지 및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) 그리고
- 주 재정법 제163조(표준 통지 및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품, 서비스, 기술 및 자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)

이천이십육년 팔월 십사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,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관